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운영 내규

1. 입학전형

본교대학원 입학전형 학칙에 준하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가로 학과내규로 정한다.

1.1 (일반전형) 일반전형의 선발은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을 병행한다. 서류심사와 구술시험은 ① 대학 및 대학원 성적, ② 학업 및 연구계획서(대학원 소정양식), ③ 전공에 대한 지식 및 적성, ④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⑤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시행한다. 서류심사 및 구술시험을 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며, 각각의 배점은 소정양식으로 정리하여 매뉴얼화한다.

1.2 (특별전형) 특별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 특별전형의 특성상 경력증명서, 추천서의 제출을 추가한다.

1.3 (편입학전형) 편입학전형의 선발도 일반전형에 준하되, 학과에서 정하는 사항을 추가한다.

종합시험 내규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제1조(적용범위) 본 규칙은 대학원 사회환경플랜트학과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종합시험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응시자격) 각 과정 전공 수료학점의 3분의 2 이상 취득한 재학생이나 연구등록을 필한 수료생은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제3조(시험과목) 대학원 사회환경플랜트학과에서 실시하는 종합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은 2과목, 박사학위과정은 3과목으로 한다.

제4조(응시절차)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사무실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위원) 시험위원은 사회환경플랜트공학과 전임교수 또는 재직교원(강사)로 한다.

제6조(문제 유형 및 배점) 문제는 서술형(논술형, 설명형, 사례형 등)으로 출제하며,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7조(합격점수) 종합시험의 합격 인정 점수는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제8조(시험시기) 종합시험의 시행 시기는 매년 3월과 9월로 한다.

제9조(시험결과 통지) 학과장은 종합시험 성적을 시험종료 후 1주일 이내에 해당 응시자에게 통지한다

제10조(시험의 면제) 대학원위원회가 인정하는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생이거나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완료한 학생은 종합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보충규정)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